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12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2002. 12. 20

(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노 양 현

나. 개정사유

-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. 11. 10 증원되었던 전산직 2명 (6급1, 7급1)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2. 12. 31에서 2004. 6. 30까지 연장 승인되었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한시정원 전산직 2명의 존속기한을 2004. 6. 30까지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함 (안 조례 제1649호 부칙 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헌범)

-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구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 연장 승인이 있어, 조례 제1649호의 부칙 제2항중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2. 12. 31에서 2004. 6. 30까지 연장하는 것임.

- 본 개정안의 법규상,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“수정의결”

- 별첨 수정안 참조

첨 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64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조례 제164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</p> <p>②이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</p>	<p>조례 제1649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</p> <p>②이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 시정원으로 한다.</p>

화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수정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“조례 제1649호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

②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 기관의 정원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한다“을

“조례 제1649호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 부칙

②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 기관의 정원 2명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한다“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(안)
<p>조례 제1649호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</p> <p>②이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 시정원으로 한다.</p>	<p>조례 제1649호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 부칙</p> <p>②이조례 시행으로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한 시정원으로 한다.</p>